석유산업의 경쟁촉진과 과제

康 星 喆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1. 머리말

· 국내정유산업은 지난 30여년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도하에 성장발전
  - 가격 및 이윤, 신·증설, 신규참입, 수출입, 유통 등 거의 전분야
  - 안정공급과 저유가 정책 유지로 경제성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했으나 점차 역기능 대두
· 정부규제의 점진적 완화
  - '83년 용제/제트유 가격자유화, '89년 고급휘발유/나프타 가격자유화
  - '91년 석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발맞추어 휘발유(무연 및 보통), 등유의 가격자유화, 3.14 조정명령 해제와 주유소 거리제한완화 및 정제시설(상압증류시설은 제외) 증설·개조의 신고제 전환
· 조만간 *UR* 협상타결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개방과 국제경쟁이 불가피하며 국내적으로도 본격적인 자율화 시대를 맞게 되었음.
· 이와같은 시점에서 국내외 경쟁에서 국가기간 에너지산업이 견실하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경쟁으로부터 오는 효과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 현재 정유업계는 정부의 타이트한 유가관리와 이익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저수익성을 감내하고 있으며 경쟁체제에 대비한 체질강화가 미미한 실정으로 이같은 상황하에서 정부의 경쟁촉진 대책이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점차 본격화되는 경쟁체제로의 전환시기를 맞아 경쟁시장의 최대장점인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함.

2. 경쟁체제도입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1) 대외개방에 대비한 정유산업의 경쟁력 배양
  · 정유산업의 경제적 적정규모 유지 및 질적향상으로 효율성 증대
  · 이윤통제등 정부의 지나친 간섭제거로 민간기업의

창의성, 자율성 발휘

(2) 석유자원의 효율적 배분

· 가격을 통한 수급조절기능 강화

· 효율적인 석유공급체계 구축

(3) 소비자의 편익증진

· 정유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실의 최종소비자 전달

－적정가격유지, 제품품질 및 서비스개선등

나. 추진현황

(1) 석유제품의 가격자유화

· 국내유가의 단계적 자유화

〈표 - 1〉 국내유가 자유화 추진현황

자유화일자	유 종	비 고
1983. 2. 6	용 제	
〃	제 트 유	· 국제가격에 연동 조정
1988.11. 2	아스팔트	
1989. 3.27	고급휘발유	
〃	나 프 타	· 국제가격에 연동 조정
1991. 9. 1	보통휘발유	· 국제원유가격(Oman,
〃	무연휘발유	Dubai) 및 환율변동과
〃	등 유	연동조정

－기타 발전용 *B-C*유는 '90년 9월부터 국제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용 *LPG*는 '91년 5월부터 자유화됨.

(2) 유통부문의 규제합리화

· 정유사의 석유유통부문참여 금지해제('91.9)

－'81년 3월 발동한 3.14 조정명령해제

· 주유소의 거리제한규제 완화('91.11.15)

	종 전	개 정
서울	700m 이상	350m이내
직할시 및 시읍	1km 이상	500m이내
기타지역	2km 이상	1km이내

－'93.11.15부터 거리제한 완전 해제 예정

· 석유판매업자의 상표표시제 실시예정('92년 4월)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경쟁 유도

(3) 석유제품 수입의 규제완화

· 수출입자유화의 단계적추진

－가격 자유화 유종의 수출입 자유화

· 석유정제업자외에 일반수입업자의 제품수입허용

－석유수입신고 요건으로 석유저장시설보유 의무화

· 전년수입량 기준 60일분의 저장시설 보유

－민간석유비축제도의 도입

· 전년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분 범위내

＊가격안정 및 경쟁촉진지원

(4) 정제시설의 증설 및 개조의 신고제 전환

· 수요증가 및 수요구조변화등에 따른 설비능력의 대응력 제고

· 민간투자촉진을 통한 시설고급화 및 대규모화 유도

－상압증류시설 증설만 허가제 유지

· 석유정제업 신규참입은 석유가격 및 수입자유화가 정착된 이후 허용검토

＊공급능력의 적정수준 유지로 가격안정 도모 및 경쟁여건 조성

3. 문제점/당면과제 및 대책

가. 油價관리제도의 개선

(1) 전유종의 완전 가격 자유화 실시

〈그림 - 1〉 국내 석유제품의 자유화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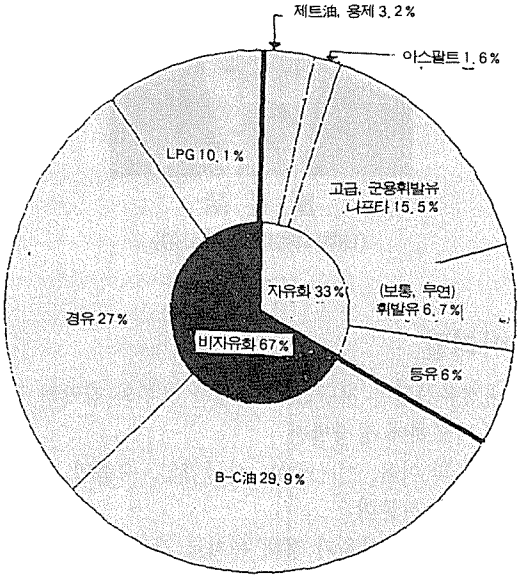

· 가격자유화 비율 33%에 불과

－소비성 유종(휘발유, 등유)의 가격 자율화

· 가격경쟁→수익성 저하

－다량생산 유종(경유, *B-C*油)의 가격통제

· 저가유지→수익성 악화

* 석유제품의 연산성에 따라 개별제품의 원가구분 곤란

· 가격고시유종의 경직적인 유가관리

– 원유가 하락시

· 신속한 유가조정→기금환수

– 원유가 상승시

· 유가조정 지연→손실누증

〈그림 - 2〉 기준유가와 국내도입원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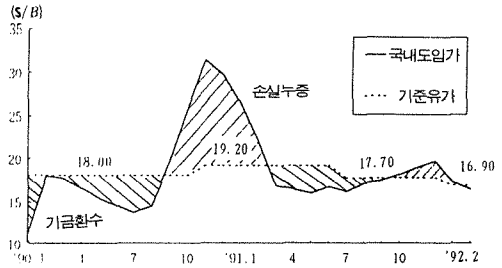

〈그림 - 3〉 정유업계 손실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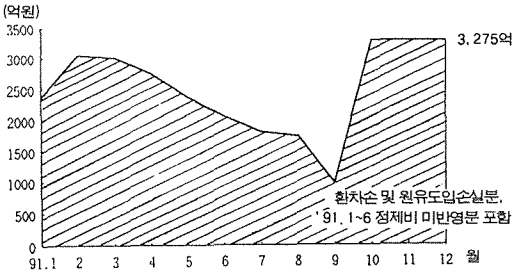

· 경유, *B-C*유 등 전유종의 가격자유화 필요

– 실시 선행조건

· 손실미보전액 전액보전

· 상표표시제 정착

· 각 유종의 가격을 국제유가에 단계적으로 접근시킨 후

(2) 국내유가 구조 개선

· 국내유가와 국제가격의 격차심화 및 왜곡

· 석유제품의 저가정책의 역기능

– 석유소비급증→석유의존도 심화, 환경공해 증대

– 연료의 유류대체가속화

– 석유절약노력 이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심리위축 및 투자유보

· 유종간 가격구조개선을 통한 국내유가의 국제유가 접근 필요

– 국제가 대비 저가수준인 경유의 가격조정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 축소

–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 가격격차의 국제수준(소비자 가격수준) 근접 필요

· 유황함량 1%당 가격차이 : 한국 0.89$/*B*, 외국 2.0$/*B*

(3)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 지양

· 정유산업의 저조한 이익구조

· 투자재원의 내부조달 불가

· 민간기업의 창의력 지배

· 경영합리화 노력 저해

· 개방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장애

나. 석유유통구조개선

(1) 주유소 거리제한 완전 철폐

· 정유사의 수직계열화 미흡

· 주유소의 적정 수준 증설 확보 필요

〈표 - 2〉 국제소비자 가격 비교('91. 12)

(단위 : 원/리터)

	한 국	일 본	대 만	프랑스	독 일	미 국
무연휘발유 [1]	497 (100)	743 (149)	532 (107)	745 (150)	725 (146)	214 (43)
등 유	216 (100)	298 (138)	411 (190)			
저유황경유	182 (100)	448 (246)	380 (209)	428 (235)	456 (251)	251 (138)
저유황 B-C [2]	92 (100)	162 (176)	120 (120)	85 (92)	113 (123)	87 (95)

자료 : *IEA*

주 : 1) 프랑스, 독일은 고급유연휘발유 기준임.

2) 프랑스, 독일, 미국은 산업용 고유황중유 기준임.

〈표 - 3〉 국내 석유제품소비자 가격추이

(단위 : 원/리터)

	1984. 3	1986. 2	1987. 10	1988. 11	1989. 3	1991. 12
휘 발 유(보통)	660 (100)	620 (94)	515 (78)	402 (61)	373 (57)	497 (75)
경 유(저유황)	281 (100)	251 (89)	210 (75)	182 (65)	182 (65)	182 (65)
B－C油(저유황)	195 (100)	166 (85)	132 (68)	94 (48)	94 (48)	92 (47)

〈표 - 4〉 각국별 휘발유 소비가격의 변동

	한 국		영 국		프 랑 스		일 본	
	W／1	지수	£／1	지수	FF／1	지수	¥／1	지수
1980 평균	580.9	100	28.3	100	3.38	100	147	100
1991 평균	480.7	83	45.2	160	5.21	154	133	90

〈표 - 5〉 생수와 각 유종의 소비자 가격비교

(단위 : 원/리터)

생 수	휘 발 유	등 유	경 유	B－C 유
212 (100)	497 (234)	216 (102)	182 (86)	92 (43)

(2) 상표표시제의 조기정착 필요
-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으로 국내 유통부문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수급안정 도모
- 주유소 판매단계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유도로 소비자보호 강화
-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의 공급계약 기간 연장 (1년→3년)

(3) 대리점, 주유소 마진 적정화
- 저수준 유통마진 시현
- 저수준의 허용마진에 따라 대리점·주유소의 효율적 경영 불가
  - －복수거래에 의한 가격할인등 허용마진 이외의 이익추구 가능성 상존
  - －고객서비스 개선 및 품질관리노력 미흡→유통부문의 영세화 초래
- 마진 2~3% 인상필요
  - －경영정상화
  - －고객서비스개선
  - －안전관리 강화

(4) *UR* 서비스 협상타결 대비한 유통망의 현대화
- 전산·정보화 강화
  - －주유소의 *POS* 확대보급을 통한 국내시장변화의 파악능력 제고
  - －생산 모우드의 전산화를 통한 수율증가 및 원가절감
-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 －파이프라인
  - －연안 수송수단 보강
  - －저유시설 확충

다. 정제시설 신증설 및 고도화 추진

(1) 정제시설의 고도화 수준 미흡
- '96 시설고도화 완료이후에도 국내고도화 비율은 낮은 수준임.

(2) 시설고도화를 통한 설비면에서의 경쟁력 배양
- 분해 및 탈황설비의 조기건설 및 확대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증대 도모
- 2자처리설비비율의 확대로 원유구매의 *Flexibility* 제고

*시설고도화 투자에 따른 정부의 지원 필요(막대한 설비투자 자금조달등)

(3) 해외정유산업에의 적극적인 진출로 이익기회 증대
- 수요증가율이 높은 동남아지역을 석유제품의 수요권역에 포함시켜 고려

· 해외 *Refinery*를 통하여 국내 수요구조와 동남아 지역 수요구조의 차이를 활용한 제품수출·입의 확대

*정유부문의 신규참입 허용

– 정유사별 국제경쟁력있는 규모가 갖춰지고 전유종 가격자유화 등 여건 정착이후

라. 석유수출입 제도개선

(1) *UR*등 대외개방 대비한 정부의 수출입통제 강화

· 석유수출입 승인제도 실시 : 원유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아스팔트, 윤활유제외) 수출입시 정부승인제 도입

· 석유수입요건 강화 : 저장시설보유 및 비축의무부과

· 예상문제점

– 수출입계약의 처리지연 및 적기처리 애로

– 민간비축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

(2) 수출입 승인/추천제도 및 수송계약 승인제도의 개선

· 유가완전자유화시 수출입추천제로 전환

– 장기계약 원유는 정부승인제 유지

– 현물원유도입 및 석유제품수출입승인은 대한석유협회장 수출입추천으로 갈음.

· 수출입업자의 자격 요건 강화

– 소비지정제주의 기조 계속유지

– *Hit & Run* 수입방지

– 비정유사의 특정제품 수입으로 정제시설의 가동율하락 방지대책 수립필요

"예" (日本의 석유수입업자 자격요건)

· 대체생산능력(수율조정능력)을 갖출것.

· 품질조정능력을 갖출것.

〈표 - 6〉 주요업종의 자기자본 이익율

(단위 : %)

	정 유	화 학	자 동 차	가 전	제조업평균
1983	0.5	10.6	23.3	21.4	8.7
1984	4.8	6.6	14.5	12.1	6.3
1985	11.2	6.3	12.7	10.0	5.6
1986	9.4	9.2	10.6	12.5	10.2
1987	9.8	9.8	12.2	10.1	9.6
1988	8.5	10.7	7.3	11.8	9.0
1989	5.6	8.5	5.0	11.3	5.5
1990	1.8	7.9	6.9	6.4	5.1
평 균	6.5	8.7	11.6	12.0	7.5

자료 : 한은 기업경영분석, 증권회사 자료

〈표 - 7〉 연도별 대리점 주유소 마진율 추이

(단위 : %)

	1972. 7	1977. 7	1982. 3	1986. 2	1987. 10	1988. 6	1990. 11	1991. 7
보통휘발유								
대리점	6.19	3.93	2.43	3.07	3.38	4.63	4.03	→
주유소	10.29	5.91	3.06	3.83	4.19	5.68	4.98	→
무연휘발유								
대리점					4.51	6.23	4.46	→
주유소					6.82	9.24	6.78	→
등유								
대리점	8.15	8.49	3.65	4.32	4.84	6.12	4.77	5.29
주유소	13.14	11.89	5.12	6.01	6.63	8.30	5.69	7.26
저유황경유								
대리점			3.47	3.80	4.18	5.27	5.37	→
주유소			5.10	6.10	6.63	8.28	8.41	→

〈표 - 8〉 상압시설대비 고도화 비율

(단위 : 천 B/D, %)

	상압시설	분해시설		탈황시설		비교
		능력	비율	능력	비율	
한국	1,235 *	204	16.5	135	10.9	'96 기준
일본	4,677	1,495	32.0	1,204	25.7	'91. 9 기준

주) *정부허가기준

〈표 - 9〉 국내 정유사 시설고도화 추진계획

	유공	호유	경인	쌍용	극동	計
· 시설규모(천BPSD)						
-중질유분해	30	50	30	60	34	204
-탈황시설	30	50	30	25	-	135
· 소요금액	4,000	7,600	2,950	8,500	5,092	28,142
· 사별허가일	87. 3.26	89. 8. 5	87. 6.12	89.12.11	82. 7.12	
· 완공예정일	92 상반기	94. 1(분해) 96. 1(탈황)	93.12.	95. 6.	89.12.	

· 일정한 저장시설을 갖출것.

*실질적으로 정유사에만 석유제품수입 허용

· 수송계약의 신고제 전환

- 장기 : 정부승인제
- 단기 : 신고제

(3) 민간비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 지원대상 : 저장시설관련투자 및 비축유구입

· 지원방안

- 석유사업기금을 통한 지원
- 세제/금융상의 지원
- 비축코스트의 유가반영 등

마. 기타

(1) 사업다각화를 통한 확대 · 발전 도모

· 석유화학부문 확대

· 대체에너지개발

(2) 상류부문 진출에 의한 수직적 통합체제 구축(상하류 부문의 균형 발전)

· 해외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지분원유 보유비율을 증대함으로써 원유시장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대외교섭능력의 제고

(3) 환경문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

· 환경문제의 *Global*화 추세

- CO_2 문제
- *SOx, NOx* 문제

· 국내환경규제의 지속적인 강화추진

- 2차시설의 확대필요

4. 맺는말

· 내수시장에서 경쟁촉진(경쟁시장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유가관리제도 개선
  - · 전유종의 가격자유화
  - · 정부의 이익규제 전면폐지
- 석유유통구조 개선 정착
  - · 합리적인 상표표시제 실시
  - · 대리점 주유소 마진 적정수준으로 인상
  - · 유통망의 현대화
- 석유수출입제도의 개선
- 제규제의 완화 및 간소화

·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개방화에 대비)

- 시설고도화 사업 설비비율의 확대 및 투자재원 확보
- 유전개발에 적극참여
-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 정유산업의 전산, 정보화구축에 의한 경영체제 강화

· 정부 · 언론 · 기업 · 소비자의 협력과 자율화시대에 걸맞는 의식전환이 필요

- 정부는 자율화 · 개방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내외적 경쟁에서 에너지 기간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유도

- 기업은 자율화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가격·품질·서비스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
- 소비자는 가격자유화가 가격인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적절한 가격조정 수용자세 필요
- 언론은 정부, 소비자,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협력하도록 유도

해외석유시장

日本鑛業 共同石油 합병

日本鑛業이 석유販賣회사인 共同石油를 흡수·합병한다.

이를 위해 日本鑛業은 非鐵部門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만들며, 합병하는 新會社의 회장에는 笠原辛雄(현 日本鑛業회장)씨가 그리고 사장에는 長島一成(현 共同石油사장)씨가 취임할 예정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석유의 개발·생산에서부터 정제·판매까지 일관조업을 하는 대형석유회사로 탄생하게 된다. 日本석유업계는 금년 3월말로 原油정제량 할당규제가 폐지되는 등 자유화 및 자유경쟁이 가속될 전망이어서 이들 회사의 합병은 업계재편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鑛業의 석유사업은 정제만을 취급하였는 바, 그 판매전문은 共同石油가 담당했었다. 共同石油에는 日本鑛業이 약60%가량 出資하고 있으며 그와의 大株主는 역시 정제전문의 富士石油와 鹿島石油이다. 당초 通產省의 주도로 설립된 共同石油는 민족자본계로 육성된 국책회사인 셈인데 당국은 대형 메이저로의 성장을 바래왔었다.

오는 5월 石油審議會(자원에너지청 장관 자문기구)의 승인을 거쳐 10월에 합병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미 1987년부터 석유심의회가 업계자유화 방향을 세워 경영합리화 및 업무집약화를 권고함으로써 합병 또는 업무제휴가 일부 실현되었던 추세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의 직접동기는 日本鑛業이 知多정유공장을 확장·고도화키로 확정함에 따라 자금부담 해결책과 관련해 합리화를 위한 합병을 지난해 가을부터 협의하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共同石油에 投資持分을 갖고 있는 日本石油와 日本鑛業이 최근 아라비아石油(주)와 함께 사우디와의 합작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동투자자로서의 日石과 日鑛의 관계를 조절강화키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通產省으로서도 그동안의 유통질서 문란과 과당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 集約化를 유도하였던 바, 업계의 톱그룹으로서 日本石油와 共同石油가 제휴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사우디와의 合作을 앞둔 日本鑛業이 共同石油와 합병함은 바람직한 物流合理化라고 환영하고 있다. 中東석유회사와의 합작기업 설립은 작금의 석유산업 규제철폐로 자유화 및 국제화가 대폭진전됨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런 추세속에서는 기업체질 및 이익향상을 위한 합병·제휴가 한두차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兩社의 합병은, 지난86년 4월 大協石油와 丸善石油가 합병하여 「코스모石油」로 발족한 이후 두번째 일로서 석유업계의 재편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日本에는 ▲석유정제전문 16개사 ▲판매전문 5개사 ▲정제·판매겸업 7개사가 있다.